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12. 10.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11.19.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8.11.20.

다. 상정일자 :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건설위원회(2018.12.10.)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징수과장 주명식】

가. 제안이유

- 2018. 4. 11. 「위생용품 관리법」이 제정되어,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와 관련한 위생용품 영업 신고 등의 수수료 종목 및 금액이 변경되고,
- 2017. 12. 21.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와 관련한 정보공개 대상 및 수수료가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의 해당 수수료를 상위 법령 개정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72종)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 종 목 | 단위 | 수수료 | |
|-------------------------|----|---------|---------|
| | | 현행 | 개정안 |
| 26) 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신고 | 1건 | 7,000원 | 28,000원 |
| 27) 위생용품 영업소 소재지 변경신고 | 1건 | 3,500원 | 20,000원 |
| 28) 위생용품 영업소 소재지 외 변경신고 | 1건 | 20,000원 | 9,000원 |
| 29) 위생용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1건 | 10,000원 | 9,000원 |
| 30) 기타위생용품제조업 신고 및 양수신고 | 1건 | 7,000원 | 삭제 |
| 31) 기타위생용품제조업 변경신고 | 1건 | 3,500원 | 삭제 |

4.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44종)

| 종목 | 열람·시청 | 현행 | | 개정안 | |
|------------|--|--|--|--------------------|----------------|
| | | 단위 | 수수료 | 단위 | 수수료 |
| 문서·도면·사진 등 |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2,000원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 |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 1,000원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 1,000원 |
| 전자파일 | 가.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2,000원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 |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 1,000원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 1,000원 |
| | 가. 문서·도면·사진 등 2) 문서·도면·사진 등 복제 (매체비용은 별도)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1MB 초과시 1MB마다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200원 100원 | <삭 제> <삭 제> | 무료 <삭제> |
| | | ※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 |

3. 검토보고(전문위원 조희옥)

○ 본 조례안은

- 1999년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에 따라 폐지된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관리되어 온 신고 수수료가 2018. 4. 11. 제정된 「위생용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 종목과 금액이 변경되고,
- 2017. 12. 21.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정보공개 대상 및 수수료가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의 해당 수수료를 상위 법령 개정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 검토의견으로는

- 「공중위생법」 폐지 후 위생용품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그동안 폐지된 법에 의거 적용한 신고 수수료 관련 사항을 새로운 법 제정에 따라 수수료 적용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문서·도면·사진 등의 전자파일을 복제하는 경우에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은 상위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상위 법령이 개정되면 해당되는 자체 조례도 신속히 정비함으로써 원활하고 적법한 제도 운영으로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고객 만족도 향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